



제43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장생탄광 수몰사건 희생자유해의 발굴 및 봉환 등에 관한 특별법안 검 토 보 고

■ 김준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742호)

2026. 3.

외 교 통 일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 용 훈

목 차

I. 개요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1
3. 주요내용	3

II. 검토의견

1. 제정안의 입법 배경	5
2. 관계부처 의견	9
3. 일본정부 입장	10
4. 제정안의 구성체계	11
4. 총괄 검토	12
5. 주요내용별 검토	18
(1) 목적	18
(2) 정의	19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20
(4) 국가의 책무	21

(5) 희생자유해발굴감식단의 설치	22
(6) 희생자유해의 신원확인 및 유해·유품의 보존 등	24
(7) 유전자 검사	27
(8) 포상금	31
(9) 관계행정기관의 협조 및 협의체의 구성·운영	33
(10) 외국과의 협력	35
(11) 국회 보고	36
(12) 권한의 위임	38
(13) 시행일	39
(14) 경과조치	40

※ 참고자료

[참고자료 1] 장생탄광 수몰사건 개요	41
[참고자료 2] 새기논회 유해발굴 활동 경과	43
[참고자료 3] (일본)전몰자 유골수집 추진에 관한 법률 번역문	46

I. 개요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김준혁의원 등 21인

나. 제안일자 : 2026년 2월 11일

다. 회부일자 : 2026년 2월 12일

2. 제안이유

일제강점기인 1942년 일본 야마구치현 장생탄광에서 발생한 수몰 사고로 다수의 조선인 노동자가 희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의 경위와 희생자 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진상규명과 유해 수습은 장기간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이로 인해 해저 갯도에 매몰된 희생자 유해가 현재까지도 방치된 상태로 남아 있으며, 희생자와 유족의 존엄과 인권 회복이 지연되고 있음.

최근 2026년 1월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정부가 장생탄광 수몰 희생자 유해에 대한 공동조사 및 DNA 감정을 통한 신원 확인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를 위한 실무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과거사 문제에 대해 양국이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될 수 있음. 다만, 해당 합의가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

는 공동조사, 유해 발굴·감식, 가족 확인, 신원 확인 및 유해 봉환에 이르는 전 과정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제도적 기반이 필요함.

그동안 장생탄광 수몰 사고와 관련하여 일부 조사와 민간 차원의 노력이 있었으나, 국가 차원의 전담 기구 설치,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 지속적인 재정 지원을 포괄하는 법률은 마련되지 않았음. 이로 인해 공동조사 추진과 유해 발굴·감식, DNA 분석 및 봉환 절차가 개별 행정조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사업의 연속성과 집행력 확보에 한계가 있었음.

이에 장생탄광 수몰 희생자에 대한 공동조사, 유해 발굴·감식, DNA 감정을 통한 신원 확인 및 유해 봉환을 국가의 책임으로 명확히 하고, 이를 전담 수행하는 희생자유해발굴감식단을 설치하여 관련 절차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아울러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일 간 합의 사항이 실제 집행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장기간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던 장생탄광 수몰 희생자 문제를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해결하고, 희생자의 존엄과 인권을 회복함과 동시에, 과거사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 있는 대응과 한·일 간 협력의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마련하여 국민적 신뢰 회복과 역사 정의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장생탄광 수몰사건의 희생자로서 수습되지 못한 유해를 조사·발굴하여 대한민국으로 봉환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국가의 책무로 희생자유해의 조사·발굴·봉환 등에 관한 시책 마련 의무, 외교적 노력 의무, 유족 의사 존중 의무를 규정함(안 제4조).
- 다. 희생자유해의 조사·발굴, 신원확인 및 봉환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교부에 희생자유해발굴감식단을 두도록 함(안 제5조).
- 라. 외교부장관이 발굴된 유해를 희생자유해로 인정할 때에는 유전자 시료를 채취하는 등 신원확인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신원확인을 거친 후에는 국내 봉환 및 본가 봉송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6조).
- 마. 외교부장관이 희생자유해의 신원과 유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희생자유해와 유족에 대하여 유전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바. 외교부장관이 제보·증언 및 발견신고 등을 통하여 희생자유해의 발굴이나 신원확인 등에 기여한 사람에게 그 기여한 정도와 유해 조사·발굴의 결과를 고려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사. 국가가 일본 정부와 공동으로 희생자유해의 조사·발굴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희생자유해의 조사·발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일본 정부와 협의하여 국제조사·발굴 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아. 외교부장관이 희생자유해의 조사·발굴·봉환의 전년도 추진실적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2조).

II. 검토의견

1. 제정안의 입법 배경

(1) 장생탄광 수몰사건 개요¹⁾

장생탄광(조세이탄광) 수몰 사고는 1942년 2월 3일,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해안에서 약 1km 떨어진 장생 탄광 지하갱도에서 누수로 인해 바닷물이 밀려들며 작업 중이던 조선인 136명 및 일본인 47명 등 총 183명이 사망한 사건임.

< 장생탄광(조세이탄광) 위치 >



자료: 홍석재, 「[단독] 수심 43m 바닷속...‘조선인 136명 수몰’ 일본 해저탄광 문 열린다」, 한겨레신문, 2025. 8. 10.

장생 탄광에서 조선인을 동원한 수는 1,258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짐. 조선인 노무자들은 3미터가 넘는 울타리로 에워싸인 숙소에

1) [참고자료 1] 장생탄광 수몰사건 개요

감금되어 일본인 계원의 감시와 철저한 통제 속에서 채탄작업에 투입되었음. 또한, 채탄현장은 수시로 누수 사고가 발생하여 수몰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으나, 조선인 노무자는 회사 측의 허가 없이는 현장을 벗어날 수 없었으며, 붕괴의 위험성이 있어 채탄을 하여서는 안되는 지역에서의 작업도 강행되었음.²⁾

장생 탄광 수몰 사고는 위와 같은 무리한 작업으로 인하여 본갱(本坑)이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수몰 사고 후 탄광회사 측이 갱구를 폐쇄함에 따라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하였음.

< 갱구 폐쇄에 관한 생존자 진술 >

이에 대해 김경봉 옹은 해수가 마을까지 솟구쳐 올라와 마을이 침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그 바람에 갱내에 생존해 있었을 지도 모를 남은 광부들의 생명을 포기하게 되었다고 분노하였다.

그러나 설도술 옹은 해면보다 높은 지역에 위치한 탄광주택지역으로 해수가 솟구쳐 올라온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며 이는 다만 유족들이 갱구로 진입하고자 몸부림치기 때문에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이차적인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한다.

아무튼 사고 발생 후 얼마 안되는 시간에 갱구가 널빤지로 봉쇄된 것은 사실로서 확인된다.

주: 김경봉 옹과 설도술 옹은 강제동원 노무자로, 사고 당시 갱외 단신숙소에 있었으며 갱구에서 사고를 목격하였다.

자료: 「일본 조세이(長生)탄광 수몰사고 진상조사」,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2007, 49쪽

2) 「일본 조세이(長生)탄광 수몰사고 진상조사」,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2007, 54-55쪽.

(2) 유해 발굴 및 봉환 추진 현황

일본 정부는 유해가 발견·인양된 이후에도 안전성 우려가 여전히 불식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유해 발굴을 위한 잠수조사 등에 정부 차원의 예산·인력 투입은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유해 발굴 관련 일본 정부 입장 >

- 인도적 관점에서 조세이탄광 사안에 진지하게 대응하여 왔고, 안전성을 전제로 한국 정부와 세심하게 소통하고 있다는 입장 표명(관방장관 기자회견, '26.1.6.)
- 日 정부 관계자, 광산·지질·잠수 등 분야 전문가 동행 하 최초로 탄광 현지 시찰('26.1.30.)

자료: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 아태1과(2026. 2. 26.)

이러한 일본 정부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인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나, 일본 시민단체인 '장생 탄광 물비상(水非常)을 역사에 새기는 회(이하 '새기는회')'를 중심으로 2024년부터 유해 발굴 활동이 진행되고 있음.

새기는회는 2024년 7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1차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유해 발굴을 위한 목표액 800만엔 이상을 모금하였고, 같은 해 9월 25일 수몰 갯도 입구(갱구)를 발견하였음. 이후 2~4차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잠수조사 및 피야(환기구) 내 장애물 제거 작업을 추진하였으며, 본격적인 유해 발굴 조사를 실시하였음.

2025년 8월 본 갯도 잠수조사 과정에서 대퇴부·상완골 등 인골 3점

과 두개골 1점 등 총 4점을 발견하여 일본 경찰에 인계하였으며, 올해 2월 7차 잠수조사에서 두개골 1점을 추가 수습하였음. 그 결과 사고 발생 83년만에 유해가 처음으로 발굴됨.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잠수사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26.2.7.)하여 잠수 조사가 중단되었음.³⁾

한편, 발굴된 유해의 신원 확인에 대해 한일 정상회담(2026.1.13.)을 계기로 한일 DNA 공동감정 추진에 합의하였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한일 당국 간 실무 협의 중에 있음.

< DNA 감정 관련 한일 정상회담 결과 발표문 내용 >

- ※ 한일 정상회담 결과 공동언론발표문('26.1.13.) 中 관련 내용
- “지난 1942년 일본 우베시 조세이 탄광에서 183명의 한국인과 일본인이 수몰 사망한 사고가 있었고, 80여 년이 지난 작년 8월에서야 유해가 처음으로 발굴된 바가 있습니다. 양국은 동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 사항에 대해서는 당국 간 실무적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자료: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 아태1과(2026. 2. 26.)

3) [참고자료 2] 새기논회 유해 발굴 활동 경과

2. 관계부처 의견

(1) 외교부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봉환 업무의 주무부처는 행정안전부로서, 장생탄광 희생자 유해봉환 역시 기존 법령 및 업무 수행체계 등을 감안하여, 외교부가 아닌 행안부가 총괄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장생탄광 희생자 유해 조사 및 봉환을 위해서는 일본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바, 유해 신원확인 및 봉환 의무규정, 일본 정부와의 공동 조사·발굴 규정 등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한편, 장생탄광 희생자에는 한국인뿐 아니라 일본인도 있는 만큼, 한국인 유족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국내 봉환하는 내용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2) 행정안전부

장생탄광 수몰사고 진상규명의 후속조치로서의 유해발굴·봉환등의 업무는 현재 행정안전부 과거사지원단에서 수행하고 있으므로 별도 특별법을 제정하여 외교부에서 유해의 발굴·봉환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3. 일본정부 입장

일본 정부는 유해가 발견·인양된 이후에도 안전성 우려가 여전히 불식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유해 발굴을 위한 잠수조사 등에 정부 차원의 예산·인력 투입은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인도적 관점에서 조세이탄광 사안에 진지하게 대응하여 왔고, 안전성을 전제로 한국 정부와 세심하게 소통하고 있다는 입장 표명(관방장관 기자회견, '26.1.6.)
- 日 정부 관계자, 광산·지질·잠수 등 분야 전문가 동행 하 최초로 탄광 현지 시찰('26.1.30.)

자료: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 아태1과(2026. 2. 26.)

4. 제정안의 구성체계

동 제정안은 장생탄광 수몰사건 희생자의 미수습 유해를 국가 책임 하에 조사·발굴·신원확인 및 봉환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외교부 전담조직 설치, 유전자 검사, 한·일 공동조사 및 연차보고 의무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아래와 같이 총 13개의 조문과 부칙 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구분	조 제목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국가의 책무
제5조	희생자유해발굴감식단의 설치
제6조	희생자유해의 신원확인 및 유해·유품의 보존 등
제7조	유전자 검사
제8조	포상금
제9조	관계행정기관의 협조
제10조	협의체의 구성·운영
제11조	외국과의 협력
제12조	국회 보고
제13조	권한의 위임
부칙 제1조	시행일(공포 후 6개월)
부칙 제2조	희생자유해의 조사·발굴 등에 관한 경과조치

4. 총괄 검토

(1) 제정안의 의의

동 제정안은 1942년 일본 장생탄광 수몰사고 희생자의 유해가 장기간 해저에 방치되어 왔고, 그간 조사가 주로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져 온 상황을 고려하여, 최근 한·일 정상 간 공동조사 합의를 계기로 유해의 조사·발굴·감식·신원확인 및 봉환을 국가의 책임으로 명확히 하려는 것임.

아울러 전담 조직 설치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관련 절차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선언적 합의를 실질적 성과로 연결하고 희생자의 존엄과 유족의 권리 회복에 기여하려는 점에서 그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제정안의 소관 및 제정의 실효성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제정안의 소관

1) 관련 법률

장생탄광 수몰사고를 비롯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진상조사 및 유의 조사·발굴·수습·봉환에 관한 법률로,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04년 3월 5일 제정되어 같은 해 9월 6일 시행되었음.

그런데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일제강점하진상규명법”)」에 따라 설치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의 진상조사 기간이 2010년 3월 만료됨.

그 결과, 미처리된 강제동원 피해조사 업무와 희생자 위로금 지급 등 지원 업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강제동원조사법”)」을 2010년 3월 22일에 제정·시행되며 「일제강점하진상규명법」은 폐지되었음.

「강제동원조사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대일항쟁기강제동원 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대일항쟁기위원회”)의 조사 기간이 2015년 12월 31일에 종료되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대일항쟁기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계하였음.

< 관련 법률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 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 및 업무) ①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의한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 2.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와 관련된 국내외 자료의 수집·분석 및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유해 발굴 및 수습에 관한 사항 제16조 (진상조사의 기간) ①위원회는 최초의 진상조사개시결정일 이후 2년 이내에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 3월전에 국무총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6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위 기간연장은 2회를 넘을 수 없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 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위원회의 존속기간 및 조사기간 등) ① 위원회는 2015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다만, 기간 내에 위원회의 업무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당시의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승계한다. 부칙<제10143호, 2010.3.22.> 제3조(사무이관 등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와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이하 “종전의 두 위원회”라 한다)의 소관 사무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가 이를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두 위원회의 행위와 종전의 두 위원회에 행한 행위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가 행하거나 위원회에 행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두 위원회에 제출된 신고와 신청 등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에 제출된 신고와 신청 등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각각 폐지한다. 1.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	---

2) 관련 법률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사무

「일제강점하진상규명법」에 따른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가 장생탄광 수몰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2005년 4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실시하였음. 그 결과 희생자 명부 136명 중 76명의 피해신고를 접수하여 45명의 유족에게 위로금⁴⁾을 지급하였음.

「일제강점하진상규명법」 폐지에 따라 장생탄광 수몰사건과 관련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의 업무를 대일항쟁기위원회가 승계하였고, 「강제동원조사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현재 관련 업무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승계하였음.

따라서 장생탄광 수몰사고 진상규명의 후속조치로서 유해발굴 및 봉환 등의 업무는 현재 행정안전부 과거사지원단에서 수행

4) 1인당 평균 약 2,000만원 수준에서 지급되었음.

중임. 과거사지원단은 발굴된 유골의 감식 관련 한·일 간 협의를 지원하며, 추후 대한민국으로의 봉환 진행 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예정임.

장생탄광 유해발굴 및 봉환에 관한 제정안은 그 입법 취지와는 별개로, 장생탄광 수몰사고 진상규명의 후속조치로서의 유해 조사·발굴·수습·봉환 업무는 사무 승계 경과 및 관련 법률 체계에 비추어볼 때 행정안전부가 담당하여 추진하는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3) 외교적 사안에 대한 고려

장생탄광 희생자 유해의 조사·발굴·수습·봉환은 일본 내 현지 조사 및 유해 반출 절차를 수반하는 사안으로, 실질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일본 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인 것으로 보임. 따라서 본 제정안은 국내적 입법조치에 그치지 아니하고, 대외적 협력과 외교적 협의를 전제로 하는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됨.

특히 외교부장관이 희생자 유해의 신원확인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 조항(안 제6조)과 국가가 일본 정부와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조항(안 제11조) 등은 일본 측의 협조를 전제로 하는 사항으로서, 일방적 입법만으로 그 이행이 담보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아울러 강제동원 문제는 한·일 간 역사 인식 및 법적 책임 문제와 직결되어 온 민감한 외교 현안이라는 점에서, 특정 사건을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면서 일본 정부와의 협력 등을 명시하는 것은 외교적 영향과 파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동 사안이 일본 정부와의 협력이 필수적인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입법의 시급성 및 별도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검토가 요구됨.

아울러 한·일 간 외교적 협의에 미칠 영향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입법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5. 주요내용별 검토

(1) 목적

제정안은 장생탄광 수몰사건 희생자로서 수습되지 못한 유해를 조사·발굴하여 대한민국으로 봉환함으로써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생탄광 수몰사건의 희생자로서 수습되지 못한 유해를 조사·발굴하여 대한민국으로 봉환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구적인 측면에서, 고통을 치유하는 대상인 ‘이들’이 장생탄광 장생탄광 수몰사건의 희생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미 사망한 희생자의 고통을 치유한다는 표현은 다소 부정확한 측면이 있으므로 고통 치유의 대상은 유족으로 특정하고 희생자에 대해서는 ‘존엄성 회복’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또한, ‘국민화합’은 주로 제주 4·3사건, 5·18 민주화운동 등 국내의 이념적·정치적 갈등을 치유하기 위한 과거사 법률에서 주로 쓰이는 목적으로, 일제강점기 타국에서 발생한 사건인 동 사건과는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2) 정의

안 제2조는 ‘장생탄광 수몰사건’, ‘희생자’, ‘유족’ 및 ‘희생자유해’에 대하여 정의함.

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생탄광 수몰사건"이란 1942년 2월 3일 일본의 야마구치 지역의 장생탄광에서 발생한 수몰로 인하여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란 장생탄광 수몰사건으로 인한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를 말한다. 3. "유족"이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존속·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하고,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한다. 4. "희생자유해"란 제2호에 따른 희생자 유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한다.

안 제2조제2호는 희생자의 범위를 국적과 무관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일본인 희생자도 포함될 수 있는바, 대한민국으로의 유해 봉환이라는 제정안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할 때 일본인 희생자는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안 제2조제3호는 유족의 범위를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 포함), 직계존속·비속, 형제자매 및 4촌 이내 친족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사 법률인 「강제동원조사법」은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형제자매로 한정하고 있으며⁵⁾, 별도의 심의를 통해 유족을 결정

5) 제3조(유족의 범위 등) ① 이 법에서 "유족"이란 피해자,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미수금피해자 가운데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의 친족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8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1. 배우자 및 자녀

하도록 하고 있음⁶⁾

이에 따라 장생탄광 수몰사건과 관련하여 유족의 범위가 법률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가 있는 바, 법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고려하여 ‘유족’의 범위를 「강제동원조사법」과 부합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안 제3조는 희생자유해의 조사·발굴 및 봉환에 관하여 동 법률이 특별법임을 규정함.

제 정 안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희생자유해의 조사·발굴(유해수습, 현장 감식 등을 포함한다. 이하 "조사·발굴"이라 한다) 및 봉환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정안에 따른 경우 탄광 수몰사건 희생자의 조사·발굴 및 봉환에 관하여는 「강제동원조사법」보다 동 제정안이 우선되어 적용됨. 다만, 제정안에 따른 경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사건 희생자의 조사·발굴 및 봉환이 행정안전부장관의 소관 업무로 진행되는 반면, 장생탄광 수몰사건은 외교부장관의 소관이 되어 행정체계

-
2. 부모
 3. 손자녀
 4. 형제자매

6) 제8조(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업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 피해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의 분절 및 정책의 일관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국가의 책무

안 제4조는 국가가 희생자 유해 조사·발굴·봉환 및 희생자유해의 유족을 찾고, 외교적 노력을 다하며, 이 과정에서 유족의 의사를 존중할 것을 규정함.

제 정 안
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희생자유해를 조사·발굴하고 대한민국으로 봉환하며 희생자유해의 유족을 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희생자유해의 조사·발굴 및 봉환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희생자유해의 조사·발굴 및 봉환 과정에서 유족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유해 조사·발굴 및 봉환이 그간 민간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점을 고려할 때, 이를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여 정부가 희생자유해의 조사·발굴 및 봉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외교적 협의를 포함한 종합적인 대응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다만, 장생탄광 수몰사건 희생자 유해의 조사·발굴 및 봉환의 책임이 일본 정부에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제정안은 자칫 우

리 정부만의 의무로 비추어질 수 있음. 따라서 우리 정부가 유해의 조사·발굴 및 봉환에 최선을 다하되, 일본 정부와의 협력 및 공동 대응을 전제로 하는 취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체계자구적인 측면에서 안 제4조제1항은 ‘희생자유해의 유족을 찾을 수 있도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희생자유해의 신원을 확인하고 희생자의 유족을 찾을 수 있도록’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5) 희생자유해발굴감식단의 설치

안 제5조는 희생자유해의 조사·발굴 및 봉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교부에 희생자유해발굴감식단을 설치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5조(희생자유해발굴감식단의 설치) ① 희생자유해의 조사·발굴, 신원확인 및 봉환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교부에 희생자유해발굴감식단을 둔다. ② 희생자유해발굴감식단에 단장 1인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③ 그 밖에 희생자유해발굴감식단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장생탄광 수몰사건과 관련하여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유

해 발굴·수습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안 제5조는 제4조에 규정된 국가의 책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을 설치하도록 한 점에서 입법적 의의가 있음.

다만, 「강제동원조사법」 제8조 및 제19조제4항에 따라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유해 발굴, 수습 및 봉환에 관한 업무가 행정안전부장관 소관으로 되어있는바, 소관 사무의 일관성 및 체계정합성을 고려하여 희생자유해발굴감식단은 외교부가 아닌 행정안전부에 두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보임.

또한, 현재까지 유해 발굴과 관련하여 한·일 정부 간에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굴 및 감식 사업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유해 발굴 및 감식을 위한 전담조직의 설치 필요성 및 시기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유해발굴감식단의 입법례로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방부에 설치된 유해발굴감식단이 있음.⁷⁾

7)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유해발굴감식단의 설치) ①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유해발굴감식단을 둔다.

② 유해발굴감식단에 단장 1인과 필요한 군인 및 군무원을 둔다.

③ 단장은 영관급 장교 또는 군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6) 희생자유해의 신원확인 및 유해·유품의 보존 등

안 제6조는 외교부장관이 발굴된 유해를 희생자유해로 인정할 때에는 신원확인을 위한 조치를 하고, 신원확인이 완료될 시 대한민국으로 유해를 봉환한 후 본가로 봉송하거나 유해보관소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음.

제 정 안
제6조(희생자유해의 신원확인 및 유해·유품의 보존 등) ① 외교부장관은 발굴된 유해를 희생자유해로 인정할 때에는 유전자 시료(試料)를 채취하는 등 신원확인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원확인을 거친 희생자유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한다. 1. 유족이 확인된 희생자유해: 유족의 의견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봉환한 후 본가로 봉송(奉送)한다. 2. 유족이 확인되지 아니한 희생자유해 또는 신원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희생자유해: 대한민국으로 봉환한 후 유족이 확인될 때까지 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유해보관소에 보관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희생자유해의 인정기준·절차와 신원확인의 기준·방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우선, 타 조항과 마찬가지로 희생자 유해의 신원확인 및 유해의 보존 주체가 외교부장관이 아닌 행정안전부장관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안 제6조제1항은 “발굴된 유해를 희생자유해로 인정할 때에는 유전자 시료를 채취하는 등 신원확인을 위한 조치

④ 그 밖에 유해발굴감식단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유전자 시료 채취 등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야 해당 유해가 희생자의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조문은 ‘희생자유해로 인정’한 이후에 신원확인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원확인 절차와 행정적 인정의 선후 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음.

유해 봉환 대상 및 절차를 살펴보면, 봉환 대상은 강제동원이 확인된 조선인 유해를 원칙으로 하며, 일본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우선 봉환이 가능한 유해를 포함함. 정부의 유해조사 결과나 일본 정부의 전몰자 유골수집사업 과정에서 발견된 한국인 추정 유해도 유전자검사 등을 통해 확인될 경우 봉환대상으로 확정됨.

봉환절차는 기본계획 수립과 봉환대상 확정을 거쳐 국내 관계 기관 협의 및 한·일 정부 간 협의를 진행한 후 최종 합의에 이르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이후 유족 공고 및 의사 확인, 관련 용역 추진, 설명회 등을 거쳐 국내로 봉환하게 됨.

< 일반적인 유해 봉환 대상 및 봉환 절차 >

○ (봉환대상) 강제동원이 확인된 남한 출신 유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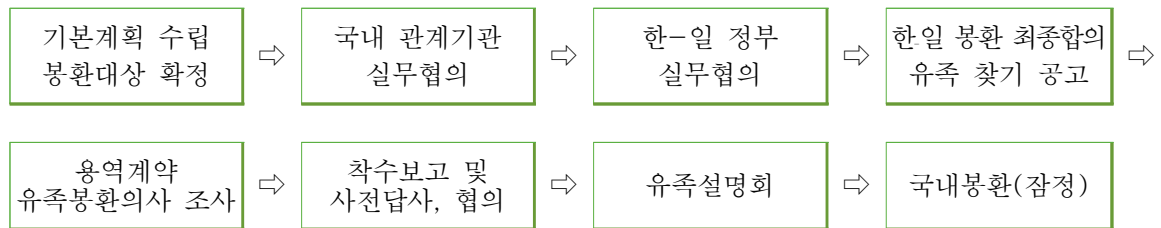
- 일본정부 협의 후 우선 봉환이 가능한 유해 등

- ▶ 신원확인 : 개체성 확보 및 유해정보(생년월일, 본적지 등)가 확인된 유해
- ▶ 강제동원 피해자 확인 : 구 위원회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희생자로 결정된 자

- 정부 등(재단 포함) 유해조사 용역결과 및 일본정부의 전몰자 유골수집사업* 중 발굴될 수 있는 한국인 유해로 향후, 유전자검사 결과 대조를 통해 확인된 유해(유전자 검사 결과 여부에 따라 봉환대상 결정)

* 「전몰자유골수집추진에관한법률⁸⁾」 제정('16년), 유골수습사업 추진 시 발견될 수 있는 한국인 추정유해는 우리 정부에 통보하기로 함

○ (봉환절차)



자료: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대일항쟁기강제 동원피해지원과(2026. 2. 26.)

한편, 제정안은 신원확인을 위한 조치 및 신원확인 완료 후의 조치를 강행규정으로 하고 있는데, 해당 조치들은 우리 정부가 단독으로 할 수 없고 일본 정부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만큼, 임의규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장생탄광 희생자에는 한국인뿐 아니라 일본인도 있는바, 한국인으로 확인되는 유해에 한정하여 국내에 봉환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8) [참고자료 3] 전몰자 유골수집 추진에 관한 법률 번역문

(7) 유전자 검사

안 제7조는 외교부장관이 희생자유해 신원 및 유족 확인을 위하여 유전자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결과를 보관·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함.

제 정 안
제7조(유전자 검사) ① 외교부장관은 희생자유해의 신원과 유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희생자유해와 유족에 대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전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전자 검사결과 등 관련 자료를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현재 발굴된 유해에 대하여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한 상황으로, 아직 유전자 검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는 않았음.

그런데 제정안과 같이 규정할 경우, 유전자 검사가 한일 양국의 협력 하에 이루어지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의 단독 권한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따라서 일본 정부와의 협력하에 유전자 검사가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조문을 구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우리 정부 내의 역할 분담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한편, 안 제7조제1항은 유전자 검사에 관한 일반법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⁹⁾에 따라 유전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제정안에 따른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생명윤리법」 제51조에 따른 적법한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유전자정보가 개인의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수집·이용이 임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또한, 안 제7조제2항은 유전자 검사결과 등 관련 자료 보관 시 「생명윤리법」 제52조가 아닌 제정안 통과 시 성안될 하위법령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

「생명윤리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은 유전자 검사에 관한 동의서와 유전자 검사 결과를 10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희생자 유해 발굴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10년의 보관기간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바 자료 보관기간에 관하여 별도의 기준을 두려는 취지로 보임.

유사 입법례로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해당 법률 시행령에서는 전사자유해의 신원이 확인하거

9)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범위) 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나 유전자 검사에 동의한 사람이 폐기를 요청할 때까지 검사 결과의 보관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음.

< 유전자 검사 관련 법령 및 입법례 >

「생명윤리 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52조(기록 보관 및 정보의 공개) ① 유전자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1. 제51조에 따른 동의서 2. 유전자검사 결과 3. 제53조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물의 제공에 관한 기록 ② 유전자검사기관은 검사대상자나 그의 법정대리인이 제1항에 따른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에 관한 신청 절차 및 서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보건복지부령</u>으로 정한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기록의 관리 및 열람) ① 유전자검사기관은 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10년간, 같은 항 제3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입법례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유전자 검사) ① 국방부장관은 전사자유해의 신원과 유가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사자유해와 유가족에 대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전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전자 검사결과 등 관련 자료를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7조(유해발굴 및 손실보상) ⑥ 위원회는 발굴된 유해가 희생자의 유해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유전자 시료를 채취하는 등 신원확인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발굴된 유해와 가족에 대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전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27조의3(유전자 검사) 위원회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암매장된 유해의 신원과 행방불명자의 가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굴된 암매장 유해와 가족에 대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전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642)과 중복이나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법안의 심사 과정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해당 법안은 희생자 중 사망한 사람의 유해에 대한 발굴·수습·봉환에 필요한 유전정보를 얻기 위하여 유해 및 그 유족에 대한 유전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유사 법안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642)

제23조의2(유전자검사) ① 위원회는 피해자 또는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해에 대한 발굴·수습·봉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해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전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유전자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전자검사 결과 등 관련 자료를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유전자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과 공신력을 구비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8) 포상금

안 제8조는 외교부장관이 희생자유해의 발굴이나 신원확인 등에 기여한 자에게 그 정도와 유해 조사·발굴 정도를 고려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8조(포상금) 외교부장관은 제보·증언 및 발견신고 등을 통하여 희생자유해의 발굴이나 신원확인 등에 기여한 사람에게 그 기여한 정도와 유해 조사·발굴의 결과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동 규정은 희생자유해의 발굴 및 신원확인 과정에서 민간의 협조를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 유사한 규정이 있음.

국방부장관은 해당 법령에 따라 전사자 유해의 제보·발굴 기여자에게는 최대 70만원, 현장조사 참여자에게는 20만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유전자 시료 또는 관련 자료 제공으로 신원이 확인된 경우에는 최대 1천만원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함.

< 유사 입법례 >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포상금) 국방부장관은 제보·증언 및 발견신고 등을 통하여 전사자유해의 발굴이나 신원확인 등에 기여한 사람에게 그 기여한 정도와 유해 조사·발굴의 결과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런데 6·25 전사자 유해와 장생탄광 수몰사건 희생자 유해는 발굴 장소의 특성, 위치의 특정 가능성 및 일반인의 접근 가능성 등에 있어 차이가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6·25 전사자 유해의 경우 정확한 위치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주로 육상에 존재하여 일반인의 접근이 가능한 반면, 장생탄광 수몰사건 희생자 유해는 수몰 위치가 비교적 특정되어 있으나 해저에 위치하여 일반인의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함.

이에 따라 6·25 전사자 유해 제보 등에 대한 포상금은 유해 발굴로 이어질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반면, 장생탄광 수몰사건의 경우에는 제보가 직접적인 발굴 성과로 연결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포상금 제도의 효과성이 제한적일 수 있음.

다만, 현재 외국인 잠수부 등이 현지에서 탐사·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외국인 잠수부 역시 포상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장생탄광 수몰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포상금 제도의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9) 관계행정기관의 협조 및 협의체의 구성·운영

안 제9조는 외교부장관이 가족의 유전자 시료 채취 등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제공, 가족관계정보의 제공 등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구할 수 있음을 규정함.

안 제10조는 외교부장관이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제 정 안
제9조(관계행정기관의 협조) ① 외교부장관은 희생자유해의 조사·발굴, 신원확인 및 봉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희생자유해와 관련된 제보나 증언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 가족의 유전자 시료 채취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공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하여야 하며,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외교부장관은 희생자유해의 조사·발굴 및 봉환 등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장생탄광 수몰사건 희생자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과 유사한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음.

< 유사 입법례 >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관계행정기관의 협조) ① 국방부장관은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 및 신원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전사자유해와 관련된 제보나 증언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민에 대한 홍보, 유가족의 유전자 시료 채취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공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하여야 하며,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체적으로, 안 제9조제1항제1호의 유전자 시료 채취는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소에서 수행하는 업무이고, 같은 항 제2호의 개인정보 제공은 유족의 현재 거주지 정보 등을 보유·관리하는 행정안전부 소관 사무에 해당하며, 같은 항 제3호의 가족관계에 관한 등록정보 제공은 대법원이 관장하는 업무인바, 해당 기관의 장의 협조가 필요함.

또한 동 협조 기관의 공무원들이 안 제10조제1항에 따른 협의체 구성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안 제9조 및 제10조 모두 그 주체를 외교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사무의 성격 및 현행 부처 간 업무분장을

고려할 때 행정안전부장관을 주체로 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보임. 이 경우 행정안전부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안 제9조 제1항제2호는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이 낮아지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10) 외국과의 협력

안 제11조는 국가가 일본 정부와 공동으로 희생자유해의 조사·발굴을 수행할 수 있으며, 희생자유해의 조사·발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일본 정부와 협의하여 국제조사·발굴 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

제 정 안
제11조(외국과의 협력) 국가는 일본 정부와 공동으로 희생자유해의 조사·발굴을 수행할 수 있으며, 희생자유해의 조사·발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일본 정부와 협의하여 국제조사·발굴 협의체를 둘 수 있다.

외국 정부와의 공동조사 실시 여부 및 협의체 구성은 외교적 관계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정부의 외교적 판단과 재량이 크게 인정되는 사항인바 법률에 이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해당 내용은 상대국 정부의 수용 여부에 따라 실질적인 이행 가능성이 좌우되는 것으로 국내법에 규정한다고 하여 실무적 추진력 확보에 큰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않음.

따라서 동 사안은 법률에 직접 규정하기보다는 외교적 협의를 통하여 시의 적절하게 추진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임.

(11) 국회 보고

안 제12조는 외교부장관이 희생자유해의 조사, 발굴 및 봉환 실적에 대하여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12조(국회 보고) 외교부장관은 희생자유해의 조사·발굴·봉환의 전년도 추진실적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동 규정은 정부의 추진 동력을 상시 유지하고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동 사건의 유해 조사 및 발굴은 난이도가 높은 해저 탐사 업무를 기반으로 장기간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매년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사업의 성격에 비추어 합리적인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

으로 보임.

참고로 과거사 관련 법률의 경우 진상조사 단계에서 조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입법례는 있으나, 이는 일정한 조사기간을 전제로 한 한시적 위원회 활동에 대한 보고라는 점에서 동 제정안과는 차이가 있음.

< 관련 입법례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5조(결과보고서 작성 등) ① 위원회는 제19조에 따른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종합적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u>대통령과 국회에 보고</u>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43조(보고 및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①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을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u>매년 2회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u>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활동이 최종 종료될 경우 위원회는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활동 전체를 내용으로 하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u>대통령과 국회에 보고</u>하여야 한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진상조사 결과 보고) ① 위원회는 추가 <u>진상조사가 종료</u>된 경우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발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2) 권한의 위임

안 제13조는 외교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희생자유해발굴감식단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13조(권한의 위임) 외교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희생자유해발굴감식단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위임”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¹⁰⁾, 외교부 소속 희생자유해발굴감식단장에게 유해 발굴 및 신원 확인 등 실무적 업무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국방부장관이 해당 법률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유해발굴감식단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에서 위임의 범위를 규정하였음.

10)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임”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유사 입법례 >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권한의 위임) 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발굴감식단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권한의 위임) 법 제15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단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 등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2. 삭제
3.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전사자유해 보호조치 요청
4. 법 제9조에 따른 전사자유해 조사·발굴(조사·발굴계획의 수립, 통지, 협의 등을 포함한다)
5. 법 제10조에 따른 전사자유해 인정 및 신원확인
6. 법 제11조에 따른 유전자 검사 및 자료 보관
7. 법 제1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8. 법 제13조에 따른 손실보상

(13) 시행일

부칙 제1조는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 제정안은 하위 법령으로의 위임 규정을 다수 포함하고 있으므로, 행정입법 정비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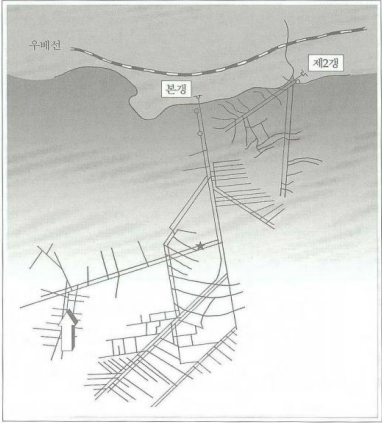
(14) 경과조치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전에 희생자유해의 조사·발굴 및 봉환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행한 희생자유해의 조사·발굴 및 봉환 등 업무를 이 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규정함.

제 정 안
제2조(희생자유해의 조사·발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희생자유해의 조사·발굴 및 봉환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행한 희생자유해의 조사·발굴 및 봉환 등은 이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강제동원조사법」에 따라 희생자유해의 조사·발굴 및 봉환 등의 업무가 행정안전부장관의 소관으로 행해지고 상황에서, 동 제정안 시행으로 업무 소관 또는 체계에 변동이 발생할 수 있는바 기존 행위의 효력과 사업의 연속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경과조치가 필요함.

[참고자료 1] 장생탄광 수몰사건 개요

구분	내 용
장 생 탄 광 연 혁	·야마구치현 우베시 요시키군 니시기와촌 도쿄나미에 위치 ·현재는 탄광터임을 확인할 수 있는 두 개의 배기·배수통 두 개 만 이 흔적을 남김 <장생탄광의 흔적>  - 종전 탄광회사측 사무실이 있었던 자리에는 추도 위령비가 건립 ·1932년 11월 본갱 개광(경영자: 야마다 신마쓰, 라이손 후치노스케) ·1942년 2월 3일 수몰사고 발생(본갱 폐쇄) ·1942년 6월 제2갱(장생탄광에서 도쿄나미역 방향에 위치) 개광 ·1942년 11월 제3갱(본갱 서쪽에 위치한 구로사키쪽) 개광 ·1945년 폐광
갱 내 구 조	 ★: 수몰지정으로 추정되는 곳 (갱구에서 약 1,010m에 위치)

구분	내 용
조선인 노무동원 실태	·(동원자 수) 총 1,630명 동원 계획 중 실제 1,258명 동원 ·(출신지) 경상북도 군위, 영천, 영덕과 경상남도 사천, 고성에 집중 ·(노무 실태) - 채탄부는 2교대로 투입: 6시부터 16~17시까지, 18시부터 다음 날 4~5시까지 - 모두 기숙생활이 강요되었으며, 감독관에 의하여 엄격하게 출입이 통제됨 - 탈출 시 구타 등의 제재가 가해짐
사고 경위	·(일시) 1942년 2월 3일 오전 9시 30분경 ·(사고내용) 바다를 향해 뻗어있는 본갱 약 1,010m 지점에서 갱내로 해수가 침투해 들어와 갱 전체가 해수에 잠기며 광부 180여명 사망 ·(사고원인) 버팀목의 지나친 제거, 채탄이 금지된 지역에서의 채탄 등 무리한 조업 - 1905년 타 탄광에서 해수침수사고가 발생하자 후쿠오카광산 감독서는 해저체줄제한을 시달하였는데, 장생탄광은 해당 조항을 위반하는 등 무리한 조업을 함
사고 처리	사고 후 얼마 안되는 시간에 갱구를 널빤지로 봉쇄, 사고 발생 며칠 후 탄광회사에서 위패를 제작하였으며, 일종의 위로금이 지급되었음

자료: 「일본 조세이(長生)탄광 수몰사고 진상조사」,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2007를 바탕으로 재구성

[참고자료 2] 새기논회 유해발굴 활동 경과

○ 클라우드펀딩 모금

- 유해 발굴 및 조사를 위한 1차 클라우드펀딩 모금('24.7월~10월)추진 및 목표 800만엔(한화 8천 만원) 이상 달성
- 수몰된 갯도 입구 추정지 탐색 공사 실시('24.9.15.~) 10일 만에 탄광 입구(갱구) 발견(9.25.)



갯도를 찾는 공사



갯도 입구 발견

- 2차 클라우드펀딩 모금(2차 24.12.10.~25.2.15. 940만엔)을 통해 전문 다이버*의 본격적인 유해발굴 조사 실시
 - * 일본(이시지), 한국(김경수·김수은) 수중 전문 잠수사
- 3차 클라우드 펀딩(4.22.~7.21. 500만엔 목표) 모금으로 피야내 장애물 철거 작업 등 실시



면바다쪽 피야 내 장애물 제거 작업 현장

- 4차 클라우드펀딩(9.13.~11월 말, 2100만엔* 목표) 26년2월 잠수조사 및 피야 내 장애물 철거 작업을 위한 모금
 - * 2월 잠수조사에 세계적 전문 다이버 6명 초청, 발견된 유해 4구와 그 외 유해 수습, 피야내장애물 제거 작업 및 안전대책 관련 비용

○ 유해 발굴을 위한 잠수 조사

- 1차 탄광 입구(갱구)를 통한 잠수 조사 ('24.10.30.)
 - ▶ 해면에서 27m 잠수, 전진 거리 180~200m. 시야10~20cm 곳곳에 금속물이나 나무 조각이 떨어져 있음, 손으로 잡아서 확인했지만 유해 일부는 아님

- 2차 탄광 입구(갱구)를 통한 잠수 조사 ('25. 1.31.~2.2)
 - ▶ 갯도 내에 있던 석탄, 목재 조각, 목재로 된 물건 수거
- 3차 탄광 입구(갱구)를 통한 잠수 조사 ('25. 4. 1.~4.4.)
 - ▶ 갯구 입구 한·일 공동 잠수 조사



3차 갯도 및 피야 조사현장(한일 방송사 취재 모습)

- 4차 환기구(피야)를 통한 잠수 조사('25.6.18~19.)
 - ▶ 먼바다 피야에서 200미터 정도 전진. 시야가 5미터 정도로 양호. 갯도 확인. 수심이 10미터 더 깊어 짐 (잠수부 안전을 위한 안전장치 필요)
- 5차 피야(환기구)를 통한 잠수 조사('25.8.6.~8.)
 - ▶ 본 갯도 입구 찾음. 안전장치 설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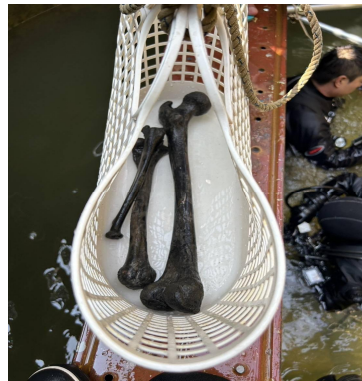


본갯도 입구

- 6차 본 갯도 잠수 조사('25.8.25.~27.)
 - ▶ 한국 잠수부가 잠수 조사 시 유해 4점 발견. (인골 확인 후 야마구치현 경찰본부 형사부에 인계 후 보관)
- 7차 본 갯도 잠수조사(26.2.6.~2.11.)
 - ▶ 일본(1), 핀란드(1), 인도네시아(1), 대만(1), 태국(3)명의 총 7명의 잠수부가 교대로 잠수 조사 실시 예정



8.25. 대퇴부, 상완골 등 3점 발견 외 신발(부츠 또는 작업화) 등도 확인



8.26. 두개골 확인

- ▶ 2.6. 일본, 핀란드, 인도네시아 잠수부 3명 잠수조사 실시 두개골 1점 수습
- ▶ 2.7. 오전 11시30분 경 대만 잠수부(웨이수=빅터) 고산소로 인한 심장 경련 발생. 익사로 14시 사망확인.
- ▶ 7차 잠수 조사 중단



5. 총괄

자료: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 지방행전국 사회통합지원과

[참고자료 3] (일본)전몰자 유골수집 추진에 관한 법률 번역문

전몰자 유골수집 추진에 관한 법률

2016년 법률 제12호

제1조(목적)

이 법률은 제2차 세계 대전으로부터 오랜 기간이 경과하여 전몰자의 유족을 비롯한 제2차 세계 대전을 체험한 일본 국민의 고령화가 진행 중인 현재 상황에서 아직도 많은 전몰자의 유골이 수집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몰자 유골수집 추진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밝히고, 전몰자 유골수집 실시의 기본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전몰자 유골수집 추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도 확실하게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률에서 “전몰자 유골수집”이란 제2차 세계 대전(1937년 7월 7일 이후의 사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오키나와, 도쿄도 오가사와라촌 이오섬, 그 밖에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일본의 지역 또는 일본 이외의 지역에서 사망한 일본 전몰자(제2차 세계 대전의 결과 1945년 9월 2일 이후 일본 이외의 지역에 강제 억류된 사람으로서 해당 강제 억류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골로서 아직 수용되지 않거나 일본으로 송환되지 않은 유골을 수용하여 일본으로 송환하고 해당 전몰자의 유족에게 인도하는 일 등을 말한다.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전몰자 유골수집 추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확

실하게 실시할 책무를 진다.

② 국가는 전몰자 유골수집 추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2016년도부터 2024년도까지의 기간(제5조제1항에서 “집중 실시기간”이라 한다)을 전몰자 유골수집 추진에 관한 시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기간으로 하고, 전몰자 유골수집을 계획적이고도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다.

③ 후생노동대신은 전몰자 유골수집 추진에 관한 시책을 실시할 때에는 원활하고도 확실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외무대신, 방위대신,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연계·협력을 꾀한다.

제4조(재정상의 조치 등)

정부는 전몰자 유골수집 추진에 관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 및 그 밖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① 정부는 집중 실시기간에 전몰자 유골수집 추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도 계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몰자 유골수집 추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에 대하여 정한다.

1. 전몰자 유골수집 추진에 관한 시책에 대한 기본방침
2. 전몰자 유골수집 추진에 관하여 정부가 종합적이고도 계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시책
3. 전2호에 열거하는 사항 외에 전몰자 유골수집 추진에 관한 시책을 중

합적이고도 계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후생노동대신은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내각회의의 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후생노동대신은 기본계획안을 작성하려 할 때는 사전에 외무대신, 방위대신,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후생노동대신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내각회의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기본계획을 공포하여야 한다.

⑥ 전3항의 규정은 기본계획의 변경에 준용한다.

제6조(정보 수집 등의 추진)

국가는 전몰자 유골수집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정리 및 분석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시설 등에 보관된 관련 문헌의 조사 및 그 밖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필요한 체제의 정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다.

제7조(관계국 정부 등의 이해와 협력)

국가는 일본 이외의 지역에서 전몰자 유골수집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전몰자 유골수집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국 정부 등과 협의를 하여 이해와 협력을 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전몰자 유골수집의 계획적이고도 효과적인 실시)

국가는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전투가 일어난 지역 및 그 밖에 전몰자 유골수집을 진행하여야 하는 지역에 대하여 그 지역의 상황에 따라 전몰자 유골수집을 계획적이고도 효과적으로 실시한다.

제9조(감정 등에 관한 체제의 정비 등)

국가는 전몰자 유골수집을 통하여 수용된 유골에 대하여 해당 유골과 관련된 전몰자를 특정하기 위하여 유골의 감정 및 유류품의 분석에 관한 체제의 정비 및 연구의 추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지정 등)

① 후생노동대신은 전몰자 유골수집에 관한 활동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사단법인 또는 일반재단법인으로서 다음 조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적정하고도 확실하게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신청을 통해서 전국에 하나로 한정하여 같은 조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하는 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후생노동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을 했을 때에는 해당 지정을 받은 자(이하 “지정 법인”이라 한다)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공시하여야 한다.

③ 지정 법인은 그 명칭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 할 때에는 사전에 그 취지를 후생노동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후생노동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11조(업무)

지정 법인은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를 한다.

1. 전몰자 유골수집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일

2. 전몰자의 유골로서 아직 수용되지 않거나 일본으로 송환되지 않은 유골을 수용하고 일본으로 송환하는 일

3. 전2호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를 하는 일

제12조(사업계획 등)

① 지정 법인은 매 사업연도에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후생노동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 할 때에도 같다.

② 전항의 사업계획서는 기본계획의 내용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③ 지정 법인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사업보고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후생노동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보고 및 현장검사)

① 후생노동대신은 이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지정 법인에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해당 직원이 지정 법인의 사무실에 출입하여 업무 또는 재산 상황 또는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검사를 하는 직원은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휴대하고 관계자의 청구가 있을 때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현장검사의 권한은 범죄수사를 위하여 인정된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제14조(개선 명령)

후생노동대신은 지정 법인의 업무 운영 또는 재산 상황에 관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 법인에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5조(지정 취소)

- ① 후생노동대신은 지정 법인이 전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했을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② 후생노동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취소했을 때에는 그 취지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16조(벌칙)

- 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같은 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에 대하여 거짓으로 보고를 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같은 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같은 항의 규정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진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는 2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법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전항의 위반 행위를 했을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에 같은 항의 형을 부과한다.

부칙 생략

자료: 외국법률번역DB(국회도서관 입법자료포털)

문 의 처

02)6788-5264
